

대학사회의 성적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가안)

전 문

대략 25만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있어도 신고율은 고작 2%밖에 되지 않는, 세계 2위의 성폭력 국가인 한국사회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 대학사회는 일상화된 성폭력의 공간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공개화 되는 일은 극히 드물고, 공개화가 되더라도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제2, 3의 폭력을 감수해야 되는 현재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위험수위에 다다른 성폭력의 현실이 은폐되고 있는 것은 성기중심적인 성인식과 남성지배의 권력으로부터 기인한다. 때문에 한국사회는 성적자율권의 침해라는 관점으로 성폭력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남성의 성적 소유권인 여성의 정조-순결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성폭력의 책임이 피해여성의 무책임성의 문제로 전가되어 오히려 폭력을 당한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는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낙인찍히는 결과, 성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고 나아가 사건을 은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강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성기가 삽입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의 여부가 성폭력에 대한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신체적·물리적 접촉의 많고 적음에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입장은 성기 혹은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무시한 것으로서 성폭력의 영향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간과한 결과이다. 또한 성기중심적인 성인식은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서 피해여성이 성을 통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배제시켜 여성은 더욱 더 성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성폭력은 독립된 개인의 성에 대한 침해이다. 성을 통한 여성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 그리고 육체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판단의 중심은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판단의 기준 또한 피해자만이 가장 명확하게 규정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사회의 성적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은 남성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을 해체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대안적 내용으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대학사회에 동등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총 칙

제 1조 (목적)

대학은 대학구성원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직무나 학업 수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위협적,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직업, 학습,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성적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대학사회 구성인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구성원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규정, 규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는 성을 매개로 대학구성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신체적인) 행위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근무(생활, 교육)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위와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형 성폭력의 조항에 의거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규정한다.

당해 조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 구성원들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상대가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근거

-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발언일 때
- ②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행위이거나 발언일 때
- ③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의 학업평가, 고용, 인사 또는 다른 학교 일에 대한 참여의 조건에 영향을 끼칠 때
- ④ 환경형 성폭력 일 때
: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이 개인의 능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는, 또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학업,근로,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때
: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공격적인 언동이라든가 혹은 고용인의 작업에 대한 불합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상처주었을 때
- ⑤ 행위 또는 발언이 지속 반복될 때

제 3조 (대상)

본교 구성원으로서 교수는 외부교수 이상을, 학생은 본교 재적생울, 교직원 은 기성회직 이상을 포함하며, 외인교수 및 교환학생도 대상에 적용된다. 피해자,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이에 포함될 경우에도 본 학칙은 적용된다.

제 4조 (피해자 보호)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성폭력 사건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③ 사건 징계과정은 물론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조 (신고인)

- ①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 당사자나 본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 또는 피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 9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 ② 신고인 보호는 제 4조의 피해자 보호에 준거한다.

제 6조 (성폭력 상담실 설치)

- ①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성폭력관련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 ② 재정문제에 있어서 학교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상담원 교체나 채용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7조 (상담실의 위상 및 업무)

서울시립대학교 여학생상담실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1항 (위상)

성폭력 상담실은 학교내의 어느 기구로부터 제약을 받지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2항 (업무)

- ①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③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하는 일
- ④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 8조 (징계위원회)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교수, 학생, 교직원 등이 동수의 비율을 구성하며 각각의 경우 성비또한 동등으로 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징계위원회 회칙에 따르며 성균관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전례를 참조하여 더 고민할 지점이다. 임시의 예를 들면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